

의안번호	2200891
의 퇴 인	박지혜의원
회 답 일	2024. 07. 09.
추 계 번호	24A1208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탄소중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3년 주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를 작성하며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9억 7,400만원, 2029년 88억 5,9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445억 2,500만원(연평균 89억 7,4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 (안 제5조)	115	—	—	115	—	230	115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안 제6조)	992	992	992	992	992	4,960	992
통계작성(안 제7조)	1,831	1,831	1,831	1,831	1,831	9,155	1,831
탄소중립산업위원회(안 제8조)	36	36	36	36	36	180	36
전문인력양성(안 제21조)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6,000
합 계	8,974	8,859	8,859	8,974	8,859	44,525	8,974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	-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3년 단위의 탄소중립산업등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탄소중립산	의무규정

		- 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제2항)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3항) -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방향 - 탄소중립산업등의 현황과 국내외 환경 분석 -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 목표 설정, 이행 점검 및 평가 방법 - 탄소중립산업등 육성방향의 종합·조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산업의 기술력 향상, 연구개발 촉진, 투자확대 및 연구성과 관리·확산 등에 관한 사항 - 특화단지의 지정계획 및 체계적 조성·지원과 관련한 사항 - 탄소중립산업등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탄소중립산업등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6항)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항)	
2	안 제6조(탄소중립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 정부는 매년 탄소중립산업등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탄소중립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탄소중립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함(제2항)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4	안 제8조(탄소중립산업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제3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탄소중립산업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제4항)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됨(제5항) •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규제개선 신청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6항)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5	안 제11조(특화단지 육성시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특화단지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관련 시·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항)	재량규정
6	안 제13조(특화단지 운영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	재량규정

		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음(제4항)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음(제6항) • 그 밖에 특화단지와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7	안 제14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탄소중립산업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의 면제 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처리 4.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5.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탄소중립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투자·제품생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	재량규정
8	안 제15조(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탄소중립산업등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등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	재량규정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제3항) 1. 탄소중립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함(제4항) •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음(제5항)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및 절차와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9	안 제21조(전문인력양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른 특화단지육성시책 수립과 연계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제3항에 따른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10	안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23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탄소중립산업등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산업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12	안 제24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탄소중립산업등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인력이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3	안 제25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등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투자대상 및 감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 고
1	안 제5조(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유사사례의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6조(탄소중립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	
3	안 제7조(탄소중립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	

4	안 제8조(탄소중립산업위원회)	○	
5	안 제11조(특화단지 육성시책)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시행령 위임 등으로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 추계가 곤란함
6	안 제13조(특화단지 운영 지원)		
7	안 제14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8	안 제15조(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9	안 제21조(전문인력양성)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유사사례의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10	안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시행령 위임 등으로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 추계가 곤란함
11	안 제23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12	안 제24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13	안 제25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안 제5조)

-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제정안에 따라 2025년부터 3년 주기로 수립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된 평균 비용을 적용함
- 본 추계에 참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비용¹⁾
 -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실시연도 2022년) 사업 예산: 80백만원
 -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실시연도 2016년) 사업 예산: 150백만원

1)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2억 3,000만원(연평균 1억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 (안 제5조)	115	-	-	115	-	230	115

나. 탄소중립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안 제6조)

- 탄소중립산업등 현황 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위한 소요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유사사례인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사업 예산을 준용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내·외 산업현황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 매년 약 10억원을 출연함
 - (사업목적·내용)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내·외 산업현황 조사 분석 등을 통한 정책기반 조성
 - (소요예산) (2022년) 1,042백만원, (2023년) 992백만원, (2024년) 992백만원²⁾

[표 3] 탄소중립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탄소중립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안 제6조)	992	992	992	992	992	4,960	992

2)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예산 및 금융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전력산업기반기금), 2024.1. p.758~775

다.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안 제7조)

- 탄소중립산업등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 작성 유사 사례인 ‘에너지통계 조사·분석’ 예산을 준용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에너지통계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매년 약 18억원을 출연함
 - － (근거법률) 「에너지법」 제19조(에너지관련 통계의 관리·공포)
 - － (소요예산) (2022년) 1,831백만원, (2023년) 1,831백만원, (2024년) 1,831백만원³⁾

[표 4]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통계작성(안 제7조)	1,831	1,831	1,831	1,831	1,831	9,155	1,831

라. 탄소중립산업위원회(안 제8조)

- 탄소중립산업위원회 설치·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비용을 추계
 - (구성) 제정안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함.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민간위원 비중을 50%로 전제하고 제정안의 탄소중립산업위원회 민간위원은 10명이 될 것으로 가정함
 - － 유사사례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⁴⁾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고, 현재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 (단가) 회의수당은 유사사례와 동일하게 30만원으로 가정
 - － 유사사례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1인당 회의참석수당은 30만원
 - (횟수) 탄소중립산업위원회는 월 1회, 연간 총 12회 개최될 것으로 가정
 - － 유사사례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연간 총 12회 개최됨

3)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24.1. p.60~74.

4)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정부위원 15명(위원장: 부총리, 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 위원회를 연 12회 개최하는 경우 운영비용은 향후 5년간 1억 8,000만원, 연평균 3,600만원(10명×12회×3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탄소중립산업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탄소중립산업위원회(안 제8조)	36	36	36	36	36	180	36

주. 탄소중립산업위원회의 민간위원 수 및 개최 횟수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마. 전문인력양성(안 제21조)

- 탄소중립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 분야를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NET-ZERO 전문인력양성’⁵⁾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
- 산업통상자원부는 넷제로 에너지기술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매년 약 60억원을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출연함
 - (근거법률) 「에너지법」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소요예산) (2022년) 65억원, (2023년) 65억원, (2024년) 60억원⁶⁾

[표 6] 탄소중립산업등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전문인력양성(안 제21조)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6,000

5) NET-ZERO 전문인력양성 사업 개요

- 기후변화대응기금 에너지인력양성(R&D, 6431-562) 사업의 내역사업임
- (목적) 넷제로 분야 에너지클러스터 지역 인력의 기술역량 강화(풍력, 스마트그리드)와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역량 전환(수소·연료전지, CCUS, 자원순환)을 위해 국내 대학(원) 교육과정 강화 및 기업 연계 R&D 훈련 지원
- (지원 비율) 100% 이내
-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기후대응기금 I), 2024.1. p.1,576~1,586

- (일부추계)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탄소중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3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를 작성하며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9억 7,400만원, 2029년 88억 5,9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445억 2,500만원(연평균 89억 7,4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 (안 제5조)	115	—	—	115	—	230	115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안 제6조)	992	992	992	992	992	4,960	992
통계작성(안 제7조)	1,831	1,831	1,831	1,831	1,831	9,155	1,831
탄소중립산업위원회(안 제8조)	36	36	36	36	36	180	36
전문인력양성(안 제21조)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6,000
합 계	8,974	8,859	8,859	8,974	8,859	44,525	8,974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주계세제총괄과	지수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3750	zisu37@nabo.go.kr